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7. 10 선고 2018가단51356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 주식회사

2. D

변론 종결 2019. 5. 22.

판결 선고 2019. 7. 10.

## 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,957,583원 및 그 중 44,041,561원에 대하여 2015.10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원고는 1995. 11. 14.경 피고 C 주식회사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와 사이에, 원고가 피고 회사의 E 주식회사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되, 그 한도를 50,000,000원, 기간을 1996. 11. 13.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, 위 보험계약 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, 피고 회사는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연 14%의,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시중 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 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,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위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, 피고 회사가 E 주식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, 원고는 1996. 3. 14. E 주식회사에게 50,000,000원을 지급한 사실,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금 중 5,958,439원만 변제하여, 원금 44,041,561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2015. 9. 30.까지 지연손해금 198,916,022원이 남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. 9. 30. 기준 원금 잔액과 지연손해금 합계 242,957,583원(= 44,041,561원 + 198,916,022원) 및 그 중 44,041,561원에 대하여 2015. 10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,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(2019. 5.21. 대통령령 제29768호)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( 2019. 5. 21.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이 정한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 D는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고 이에 항고하여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광주지방법원 2016하단756호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7. 1. 23. 채무자인 위 피고에 대한 파산폐지 결정을 하고, 위 법원2016하면756호 사건에서 2017. 9. 19. 면책불허가 결정을 한 사실, 위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위 피고가 항고하였으나, 항고심(광주지방법원 2017라270호)은 2019. 6. 7.경 위 항고를 기각하여, 위 면책불허가결정이

2019. 6. 22.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, 피고 D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조순표